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5
----------	-----

2011년 2월 2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0년 11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1년 2월 24일 상정 ·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 가. 제안이유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시설 이용료의 감면, 가산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고, 외래어 표기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임

##### 나. 주요골자

신규 공원시설인 파크골프장과 야영장 등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의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시행규칙에서 정하였던 감면 및 가산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기존 조례 내용의 순서 및 용어를 정리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청수)

##### 가. 안제10조제1항 외래어 표기의 오기 수정

- 우리나라의 외래어 표기는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원칙에 따르고 있는데 “잔디블럭”의 블럭은 블록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안제10조제1항의 “잔디블럭”을 “잔디블록”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 나. 안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제1항~제3항 내용정리

- 안제15조제1~3항은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제15조제1항~3항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1항과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은 시행규칙 제9조 공원이용자 신고 등에 관한 내용 중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 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 관련 세부사항은 규칙(제9조)에 따른다는 내용과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 이를 공원관리청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한 것임.
-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에 관하여 골자가 되는 내용을 보다 상위법령인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취지이므로 공원의 이용과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현행 조례의 별표 1과 2에는 감면 및 가산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시행규칙의 별표 1과 2에서 명시되어 있는 감면 및 가산규정과 신설된 파크골프장 및 야영장에 대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임.
- 성수기와 비성수기 그리고 주간과 야간 등 다양하고, 탄력적인 요금체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원이용율과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를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은 시설이용요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해소에도 기여할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 외에 별표 2의 제목이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 제1항 관련)로 되어 있는데 별표 1에서 공원입장료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2의 제목은 공원시설 이용료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 또한, 조례의 내용 중 공원관리청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원관리청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일부개정내용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별표 2의 제목 수정 및 공원관리청에 대한 정의 등의 추가되어야하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3. 합 의 : 해당부서와 합의되었음
4. 기 타
  - 1) 입법예고(2010. 10. 11 ~ 10. 21)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 3)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45
----------	-----

제출년월일 : 2011년 2월 24일

제출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서울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하고 그 외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하여 공원관리청에 대한 조례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용료와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공원관리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정리하였음.

3. 참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안 별표 2의 제목을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에서 “공원시설 이용료”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이용료"란 공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u></p> <p>2. <u>"사용료"란 공원 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u></p> <p>3. <u>"요금"이란 입장료,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의 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소비·관람한 대가를 말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자치구청장을 말한다.</u></p> <p>2. <u>"이용료"란 공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u></p> <p>3. <u>"사용료"란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u></p>

제10조(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원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잘게 부순 돌 및 잔디블럭 등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점용기간 만료 후 시설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 6. (생략)  
② (생략)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① 영 제46조에 적합한 공원으로 별표 1 및 별표 2의 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  
-----  
-----.

- -----  
-----  
----- 잔디블록 -----  
-----  
-----  
-----  
-----  
-----  
-----.

-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① 영 제46조에 해당하는 공원의 입장료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

- ~ 6.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외국환 및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서울특별시 금고 은행의 전일 최종 현금 매입가를 적용하여 받고, 거스름돈이 있을 경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각 별표 1 및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생략)

② 위탁관리자가 공원 시설 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외국환 및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서울특별시 금고 은행의 전일 최종 현금 매입가를 적용하여 받고, 거스름돈이 있을 경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2]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별표2]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별표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신설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40		신설	잔디광장	1㎡당, 2시간	20~40		◦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 야간은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 풋살경기장의 청소년 이용 금액은 30% 할인. 단, 어린이는 무료. (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일반운동장(광장)		5~10	10~20		일반운동장(광장)		5~10	10~20			
	축구장	잔디	120,000~156,000	300,000~390,000		잔디	1회 2시간	120,000~156,000	300,000~390,000			
		인조잔디	55,000~82,500	110,000~143,000				인조잔디	55,000~82,500		110,000~143,000	
	풋살경기장	10인용	25,000~32,500			10인용	25,000~32,500					
		6인용	15,000~19,500				6인용	15,000~19,500				
	테니스장	실외	1면당, 2시간당	8,000~16,000		실외		1면당, 2시간당	8,000~16,000			
		실내	1면당, 2시간당	25,000~37,500			실내	1면당, 2시간당	25,000~37,500			
	파크골프장	어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6,000 3,000~4,000 2,000~3,000			파크골프장		어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6,000 3,000~4,000 2,000~3,000		◦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				
	야영장	야영장소사용료 1회당	10,000~30,000			야영장	야영장소 1회당	10,000~30,000			◦ 임시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인 경우 20인(야영장소 5면) 이상 이용시 30% 할인	
		전기사용료 1회당	3,000~5,000				전기 1회당	3,000~5,000				
	야영장 물품대여료	야영텐트 (1회당)	5,000~20,000			야영장 물품대여료	야영텐트 1회당	5,000~20,000				
1인용 매트 (1회당)		1,000~1,500		1인용매트 1회당	1,000~1,500							
사진촬영	1인 1년당	130,000~169,000		사진촬영	1인 1년당	130,000~169,000		◦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촬영 및 녹화	1시간당 초과시간당	13,000~19,500 6,500~13,000			촬영 및 녹화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13,000~19,500 6,500~13,000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	1,000~20,000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	1,000~20,000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신설)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개정안과 같음)
공통	강의실 대여료	1시간당	20,000~30,000	(신설)	공통	강의실	100㎡당, 1시간당	20,000~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li> <li>◦ 야간은 이용료의 100% 가산</li> <li>◦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li> </ul>	
	(신설)	(신설)	(신설)			야외무대	2시간당	100,000~1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의 시설이용료는 공원관리청이 정하며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자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li> <li>◦ 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li> <li>※ (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li> <li>◦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li> <li>◦ 어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li> <li>※ 풋살경기장의 청소년 이용요금은 30% 할인(단, 어린이는 무료) 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이상일 때 적용한다.</li> </ul>					(삭제)				
남산공원	남산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이하)	3,000 ~ 6,000 2,000 ~ 4,000	(신설)	남산공원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이하)	3,000 ~ 6,000 2,000 ~ 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장애인콜택시·장애인 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li> </ul>	
서울대공원	돌고래쇼장 관람료	어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3,000 1,500 ~ 2,000 1,000 ~ 1,500		서울대공원	돌고래쇼장 관람료	어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3,000 1,500 ~ 2,000 1,000 ~ 1,500		
	자연캠프장	어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4,000 1,500 ~ 3,000 1,000 ~ 2,000			자연캠프장	어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4,000 1,500 ~ 3,000 1,000 ~ 2,000		
어린이대공원·서울숲	야외무대 이용료	주간 1회 2시간	100,000~15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li> <li>◦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li> <li>◦ 어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체 :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li> <li>◦ 주·야간 구분</li> <li>▷ (11월~2월) -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4:00</li> <li>▷ (3월~10월) - 주간 : 09:00~19:00 야간 : 19:00~24:00</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분</li> <li>◦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li> <li>◦ 어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체 :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li> <li>◦ 주·야간</li> <li>▷ (11월~2월) -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4:00</li> <li>▷ (3월~10월) - 주간 : 09:00~19:00 야간 : 19:00~24:00</li> </ul>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잔디블럭”을 “잔디블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① 영 제46조에 해당하는 공원의 입장료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 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외국환 및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서울특별시금고 은행의 전일 최종 현금 매입가를 적용하여 받고, 거스름돈이 있을 경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2의 제목을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에서 “공원시설 이용료”로 하고 내용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이용료"란 <u>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u></p> <p>2. "사용료"란 <u>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u></p> <p>3. "요금"이란 <u>입장료,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의 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소비·관람한 대가를 말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원관리청"이란 「<u>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u>」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u></p> <p>2. "이용료"란 <u>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u></p> <p>3. "사용료"란 <u>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u></p>
<p>제10조(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u>공원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u>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잘게 부순 돌 및 잔디블럭 등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점용기간 만료 후 시설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u></p>	<p>제10조(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 -----.</p> <p>1. ----- ----- <u>잔디블록</u> ----- ----- ----- -----</p>

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 6. (생략)

② (생략)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① 영  
제46조에 적합한 공원으로 별표 1  
및 별표 2의 공원에 입장하거나 공  
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입장  
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②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외국환 및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서울특별시금고 은행의 전  
일 최종 현금 매입가를 적용하여  
받고, 거스름돈이 있을 경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  
한다.

④ (생략)

-----.

2.~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① 영  
제46조에 해당하는 공원의 입장료  
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는 원  
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 이용료  
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공원관리청은 위  
탁관리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  
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외국환 및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서울특별시금고 은행의 전  
일 최종 현금 매입가를 적용하여  
받고, 거스름돈이 있을 경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 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40		◦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 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 할인, 어린이는 무료. (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일반운동장(광장)		5~10	10~20		
	축 구 장	잔 디	120,000~156,000	300,000~390,000		
		인조잔디	55,000~82,500	110,000~143,000		
	풋살경기장	10인용	25,000~32,500			
		6인용	15,000~19,500			
	테니스장	실 외	1면당, 2시간당	8,000~16,000		
		실 내	1면당, 2시간당	25,000~37,5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6,000 3,000~4,000 2,000~3,000	◦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			
	아영장	아영장소 1회당	10,000~30,000			◦ 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인 경우 20인(아영장소 5면) 이상 이용시 30% 할인
		전기 1회당	3,000~5,000			
	아영장 물품대여료	아영텐트 1회당	5,000~20,000			
		1인용매트 1회당	1,000~1,500			
	사진촬영	1인 1년당	130,000~169,000			◦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촬영 및 녹화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13,000~19,500 6,500~13,000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	1,000~20,000				
강의실 대여료	100㎡당, 1시간당	20,000~30,000		◦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아외무대	2시간당	100,000~150,000				
남 산 공 원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16인승이상)	3,000 ~ 6,000		◦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장애인콜택시·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이하)	2,000 ~ 4,000			
서 울 대공원	돌고래쇼장 관람료	어 른 1회당	2,000 ~ 3,000			
		청소년 1회당	1,500 ~ 2,000			
어린이 1회당		1,000 ~ 1,500				
자연캠프장		어 른 1회당	2,000 ~ 4,000			
		청소년 1회당	1,500 ~ 3,000			
		어린이 1회당	1,000 ~ 2,000			
비고	※ 구분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주·야간 ▷ (11월~2월) -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4:00 ▷ (3월~10월) - 주간 : 09:00~19:00 야간 : 19:00~24:00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2]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별표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신설〉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 통	잔디광장	1㎡당,	20~40		〈신설〉	잔디광장	1㎡당,	20~40		◦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 야간은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 풋살경기장의 청소년 이용 금액은 30% 할인. 단, 어린이는 무료. (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일반운동장(광장)	2시간	5~10	10~20		일반운동장(광장)	2시간	5~10	10~20				
	축구장	잔 디	1회 2시간	120,000~156,000		300,000~390,000	축구장	잔 디	1회 2시간		120,000~156,000	300,000~390,000	
		인조잔디		55,000~82,500		110,000~143,000		인조잔디			55,000~82,500	110,000~143,000	
	풋살경기장	10인용	1회 2시간	25,000~32,500		풋살경기장	10인용	1회 2시간	25,000~32,500				
		6인용		15,000~19,500			6인용		15,000~19,500				
	테니스장	실 외	1면당, 2시간당	8,000~16,000		테니스장	실 외	1면당, 2시간당	8,000~16,000				
		실 내	1면당, 2시간당	25,000~37,500			실 내	1면당, 2시간당	25,000~37,5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6,000 3,000~4,000 2,000~3,000		〈신설〉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6,000 3,000~4,000 2,000~3,000	◦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				
	야영장	야영장소 사용료 1회당 전기사용료 1회당		10,000~30,000		〈신설〉	야영장	야영장소 1회당	10,000~30,000		◦ 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인 경우 20인(야영장소 5면) 이상 이용시 30% 할인		
				3,000~5,000					전기 1회당			3,000~5,000	
	야영장 물품대여료	야영텐트 (1회당) 1인용 매트 (1회당)		5,000~20,000		〈신설〉	야영장 물품대여료	야영텐트 1회당 1인용매트 1회당	5,000~20,000				
				1,000~1,500					1,000~1,500				
	사진촬영	1인 1년당		130,000~169,000		사진촬영	1인 1년당		130,000~169,000				
촬영 및 녹화	1시간당 초과시간당		13,000~19,500		〈신설〉	촬영 및 녹화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13,000~19,500		◦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6,500~13,000					6,500~13,000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		1,000~20,000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		1,000~20,000					

현행					개정안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신설)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공통	강의실 대여료	1시간당	20,000~30,000	(신설)	공통	강의실	100m <sup>2</sup> 당 1시간당	20,000~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li> <li>야간은 이용료의 100% 가산</li> <li>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li> </ul>
	(신설)	(신설)	(신설)			야외무대	2시간당	100,000~1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의 시설이용료는 공원관리청이 정하며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자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li> <li>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li> <li>※ (주)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li> <li>○ 어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li> </ul> </li> <li>※ 풋살경기장의 청소년 이용요금은 30% 할인(단, 어린이는 무료)</li> <li>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이상일 때 적용한다.</li> </ul>					(삭제)			
남산공원	남산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16인승이상)	3,000 ~ 6,000	(신설)	남산공원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16인승이상)	3,000 ~ 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동행허가차량·장애인콜택시·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li> </ul>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이하)	2,000 ~ 4,000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이하)	2,000 ~ 4,000	
서울대공원	돌고래소장 관람료	어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3,000 1,500 ~ 2,000 1,000 ~ 1,500	(신설)	서울대공원	돌고래소장 관람료	어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3,000 1,500 ~ 2,000 1,000 ~ 1,500	
	자연캠프장	어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4,000 1,500 ~ 3,000 1,000 ~ 2,000			자연캠프장	어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4,000 1,500 ~ 3,000 1,000 ~ 2,000	
어린이대공원·서울숲	야외무대 이용료	주간 1회 2시간	100,000~150,000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li> <li>○ 어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li> <li>○ 주·야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월~2월) -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4:00</li> <li>▷(3월~10월) - 주간 : 09:00~19:00 야간 : 19:00~24:00</li> </ul> </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li> <li>○ 어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li> <li>○ 주·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2월) -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4:00</li> <li>▷ (3월~10월) - 주간 : 09:00~19:00 야간 : 19:00~24:00</li> </ul> </li> </ul> </li> </ul>			